

特輯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

김 흥 주
한국교육개발원

I. 서 언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 즉 인간은 그가 속한 물리적, 문화, 심리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은 그 특성상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주변 환경이 인간에게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면 개체의 성장과 발달이 극대화되어 자아실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면 개체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인간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력은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유아나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절대적이기 마련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태어나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어느 환경보다도 학교환경의 순기능 발휘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이에 따라 부분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환경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학교내의 환경에 국한하여 왔지만 학교 올타리 밖의 주변환경 정화에 대한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생활의 장은 학교 올타리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학교주변을 접하게 되어 있고 그 곳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다 어떤 지역사회의 어느 환경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가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들에게도 해당학교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심어주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학교주변환경이 비교적 적인 시설과 공해·교통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주변의 전자오락실, 소극장, 만화가게, 카페, 숙박업소, 디스코장, 당구장, 유흥가, 심야만화가게 등 유해 업소 111개당수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출입하고 있으며 이들 장소가 청소년 비행과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도종수 외, 1990)

때문에 정부는 오래전부터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학교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이 구역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1981년 조사의 경우 평균 1개교당 위반 행위 및 시설수가 약 98개(대한교육연합회 1981)로 조사된 바 있으며, 1992년 조사의 경우에는 학교당 평균 약 28개(한유경, 1992)로 나타난 바. 그 동안 많이 감소되어 왔지만 아직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 특히 학교주변에 거주하거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 그리고 학교당국 모두가 학교주변의 환경정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원인을 국민의식의 미흡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너무 많다 정부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는

학교주변에 아동이나 학생들을 관리하는 법적 대응이 너무 미흡하며, 정부 역시 부처이기주의 혹은 지방정부의 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업주 측의 이기주의 때문에 동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을 중심으로 먼저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여 보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문제점,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개념과 분류

그 동안 유해환경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나 학계에서 널리 관심있게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학교주변 유해 환경의 개념이나 범주 등에 이론적 이해는 구체적으로 성의되지 못해왔는데 그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소홀이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 환경이 시되고 있는 유해성과 그 구조의 모호성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해환경과 유해성은 환경의 범주에 의해시 뿐만아니라 그 환경에서 살고있는 사람의 연령과 정신적 발달의 정도와 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특히 학교주변에서 청소년이나 학생의 유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논리에 따라 혹은 성인과 청소년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도종수 외, 1990).

이러한 상황때문에 학교주변환경에서 학생 혹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중 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은 무엇이고 그 환경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나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풍부하지가 않다. 더욱 이 학교주변환경중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안에 있는 환경만을 제한하여 그 환경중 어느 환경이 과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총소년들이 정화구역안에서든 아니면 그 바깥에서든 접할 수 있는 사회환경중 어느 환경이 어떻게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있는데 이를보면, 유혜경의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인에 관한 연구"(1986), 김준호의 "청소년 주변 유해환경과 비행선도 방안 연구"(1987), 유수현의 "청

소년 유해환경과 지도대책"(1989), 이중한의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매체"(1989), 정진홍의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1989),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1990), 도종수 외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1990), 한준상의 "청소년 유해 환경과 청소년 정책"(1991),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1992), 권이종 외의 "21세기를 대비한 서울청소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1994)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요소들 즉, 사회 심리학적 개념요소, 문화적 요소, 물리적 요소 및 구조적 요소들로써,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적 기대와 압력, 상황, 조건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정서적 정신적인 성장에 비교육적인 힘을 발휘하는 청소년에 대한 모든 '교육적 공해(教育的 公害)'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교육적 공해 중에서도 학자들의 관심이나 견해에 따라 특히 주목해야한다고 주장되는 유해환경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유재천(1989)은 청소년은 유해환경 중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광을 주시하여 그 대상으로 잡지, 방송, 영화, 만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한(1989) 역시 청소년 매체물의 불건전성을 유해환경의 유해요소를 간주하고 있으며 유수현(1989)은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대표적인 유해환경으로서 첫째,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둘째, 학교주변 향락업소, 셋째, 유해 저질 영상매체, 넷째, 유해 저질 출판물을 범주로 하고 있다.

학교주변의 향락업소의 실태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전반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YMCA(1989)에서는 청소년 환경의 유해요소로서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무분별하게 자극함과 동시에 청소년 범죄의 주원인으로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음란비디오, TV, 성인 잡지와 만화 등과 특히 향락업소 등과 같은 유해업소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향락문화의 현황에 대한 서울 YMCA시민운동보고서(1990)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환경을 비교

적 포괄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환경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으로 정의하고, 유해환경의 범주는 첫째,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과 둘째, 매스컴 등의 대중내체, 세째 전자오락실 넷째, 만화가게, 다서째, 비디오, 영화 및 유선방송, 여섯째, 불량출판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주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는 곳, 당구장, 디방, 술집, 디스코, 극장 및 유흥가 등(김준호, 1987)과 같은 향락업소 중심의 물리적 환경이나 청소년 잡지, 만화, 신문 등 대중매체와 같은 정보환경의 유해성 앤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대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건전성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적 자극 중심의 유해성 요인 인식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성적 관련 사항이나 문제의 거론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 기인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한국 사회의 전통적 무와풍토는 통념적으로 유해환경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있어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없이 사회적 유해환경으로 인식되게 하기도 한다(도종수 외, 1990).

이상과 같은 각종 주장들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서 유해환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석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적 논거는 거의 없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유해환경과 비행이 어떠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증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나 주장들은 적어도 청소년 문제행동이나 비행충동이 유해환경과 대단히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유혜경, 1986; 김준호, 1987).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환경의 분류는 많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나르게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유해환경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해환경은 그 존재 자체가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중에서 그것이 물리적 환경이건 심리적 환경이건 사회문화적 환경이건 간에 인간과의 반응 영향체계의 관계 속에서 발달과정에 장애가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체계의 총회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환경의 분류 기준에 근거해 보면 유해환경은 환경 자체의 기본적 성격에 중점을 두어 자연적 유해환경 제도적 유해환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도종수 외 1990).

첫째, 자연적 유해환경은 지역의 기후, 지리 등 자연적 입지조건, 음향, 공기, 일조, 수질 등 주변의 자연조건 등의 좋지 않은 반응과 영향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질 오염이나 공기오염 및 소음공해 등 각종 환경 공해는 일간 사회 뿐만 아니라 주요한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일종이다.

둘째, 물리적 유해환경에는 지금까지 유해환경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시하고 지적해온 것처럼 향락퇴폐업소, 유흥 유기장, 각종 불건전한 시설과 장소 등이 해당된다.

셋째, 제도적 유해환경은 물리적, 자연적 환경과 달리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화적 요소들 중에서 발달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각종 사회이념, 가치 문화 등과 사회나 학교규칙 등의 각종 규정과 제도 등을 말한다.

이와같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해환경 자체가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조건때문에 나타날 환경이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같은 다양한 유해환경 중 특히 물리적 유해환경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의 탐색에 초점을 둔것임을 밝혀둔다.

III.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 제5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구역으로써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정화구역은 특히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나머지 구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어 상대정화구역에서는 동법에서 금지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일정 시설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시설로써 현재 계속 영업중인 불법 시설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1996년 3월 현재 정화구역 안에는 모두 2,742개의 불법 업소가 영업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450개는 실내정화구역 안에, 나머지는 상대 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여러 유해 시설종류 중 정화구역 안에 가장 많은 불법 시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자유기장으로서 전체 불법 시설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노래연습장(24%), 담배자동판매기(22%), 여관(5%)의 순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2,742개 업소중 1,465개 업소는 이미 '95년 12월 31일 기한으로 이전 혹은 폐쇄되었어야 할 시설이며 나머지 1,277개 업소는 늦어도 '98년 까지는 역시 이전 혹은 폐쇄해야만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불법 시설 수를 각급학교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를 보면 총 2,742개의 불법 시설 중 약 62%인 1,713개가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안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중학교에 약 22%인 607개가, 고등학교에 약 9%인 23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초등학교의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가장 많아 특히 한창 성

표 1 정화구역내 불법 유해시설 현황

('96년 3월 기준)

불법유해시설 종류	절대	상태	계
극장	4	0	4
압축 액화가스 저장소	3	0	3
도축장	0	1	1
화장장	0	1	1
· 오불매립 수집장소	3	2	5
가축시장	0	1	1
유홍 음식점	22	4	26
호텔	2	0	2
여관	126	19	145
여인숙	48	12	60
당구장	34	23	57
전자유기장	158	1,002	1,160
무도장·무도학원	8	19	27
노래연습장	114	554	658
담배자동판매기	18	574	592
계	540	2,202	2,742

출처 교육부 자료

적 발달의 초기기에 있는 이를 초등학교 아동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이 각종 유해시설 때문에 저해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정화구역 안에서의 불법 시설의 수는 실제 우리가 학교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수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화구역안에는 이러한 수치보다 더 많은 유해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컨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1981년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평균 1개교 당 위반 행위 및 시설 수가 약 98개 (대한교육연합회, 1992)로 보고된바 있다 그리고 1989년의 YMCA의 조사에 의하면 신자오락실, 술집 숙박업소 등 모두 870개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조사해본 바 이중 50.3%인 438개 업소가 학교주변의 정화구역안에 위치해 있었음을 보고한바 있다 (YMCA, 1989)

이와같이 실제 불법 유해시설의 수보다 조사 결과에 의한 수치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이미 우리가 정화구역 안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해시설중 상당수는 이미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즉 이는 여러 유해시설이 이미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동의받은 것으로, 역설적이기는 하나 불법적인 유해시설이 아니라 합법적인 유해시설도 상대정화구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각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금지되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상대구역 안에서만은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인 경우 이미 상당수 동의해

표 2 각급학교별 정화구역내 불법업소수

학 교 별	절 대	상 대	계
유치원	107	9	115
초등학교	251	1,463	1,713
중학교	95	512	607
고등학교	35	199	234
특수학교	1	2	3
전문대학	9	0	9
대학교	33	7	40
각종학교	9	11	20
계	540	2,202	2,742

출처 교육부 자료

주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95년 1년간 모두 전국적으로 11,516건의 심의 신청이 들어와 이중 약 69%에 해당하는 7,954개의 유해업소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바 있으며, 금년 1월 1일에 3월 31일 사이의 3개월 동안에도 다음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벌써 전국적으로 2,223건의 심의가 신청되어 이중 약 74%인 1,660개의 시설이, 학교보건법에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상대정화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동의 건수는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경기, 부산, 경남 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에서 금지되고 있는 시설이라 할 지라도 일정 시설은 상대구역 안에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 때문에 실제 정화구역 안에서 많은 유해시설이 합법적이라는 명목 아래 빈번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으로 정화구역 안에서 근지되고 있는 유해 시설이 청소년 혹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로 유해한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중 어느 환경을 가장 많이 접촉해 보았으며 접촉해본 환경 중

해당환경이 어느정도 유해한지에 대한 의견조사 연구가 일부였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가 도종수 외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1990)와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1992) 이다

도종수 외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 3,990명, 근로청소년(24세 까지) 1,000명 등 모두 5,9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 품 등의 이용율과 그 환경의 유해도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위의 표 4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표 4. 청소년의 시설 및 장소 이용율과 유해도 (%)

시설 및 장소	이용율		유해도	
	전체	남고	전체	남고
공원	80.0	82.6	4.6	4.0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22.9	25.6	56.8	47.2
전자오락실	64.1	92.5	49.1	30.1
성인오락실*	6.7	10.2	86.2	81.9
당구장	17.4	43.2	68.4	46.9
몰라스케이트장	59.0	61.2	22.3	20.6
디스코장	18.4	17.1	66.8	55.7
성인디스코장*	12.6	7.0	81.0	78.1
퇴폐이발소*	4.0	4.2	89.3	90.1
경양식집*	71.0	78.2	12.7	6.7
카페(주류 취급점)*	32.0	43.0	55.8	43.9
일일찻집*	27.5	27.6	32.9	33.4
DJ커피숍*	31.5	29.2	31.7	26.3
포장마차*	39.8	46.6	25.5	20.4
음악감상실*	34.7	26.9	6.5	5.9
만화가게	56.6	78.2	39.4	25.9
심야만화가게*	10.0	17.4	84.1	79.4
사설독서실	26.4	63.1	15.8	10.5
제과점	91.1	89.9	2.2	1.3
분식점	92.5	94.5	5.2	2.0
페스트푸드점	69.8	71.6	8.2	5.7
비디오가게	50.6	62.7	41.4	36.4
입시 및 각종학원	61.6	62.1	9.2	9.0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	9.5	26.0	88.4	81.2
문방구	97.1	97.4	2.5	2.6
사창가*	7.8	10.8	82.9	81.8
유흥가*	15.1	25.3	84.7	81.3
소극장*	62.1	72.7	30.5	27.1

주 . *는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임

자료 도종수 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p 62

출처 교육부 자료

이를 보면 세파점, 분식점, 페스트푸드점, 공원 등의 이용률이 제일 높지만 이를 유해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극히 적으며,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소극장, 카페 등은 비교적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이용해본 경험도 있고 또한 유해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오락실 당구장 성인디스코장, 퇴폐이발소, 심야 만화가게 음란출판물노점상 사창가, 유흥가 등은 이용률은 낮았지만 응답자들은 매우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도종수 외, 1990).

한편 한국청소년학회의 연구에서는 전국, 중학생 1 286명 고등학생 1 343명 등 모두 2 629명을 대상으로 10개의 유해 업소를 선정하여 그 출입경험과 유해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먼저 표 5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여러 유해시설 중 비디오 가게, 영화관, 전자오락실 등에 출입한 경험이 매우 많으며, 남여별로 보면 남자는 전자오락실을 여자는 영화관을 출입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실제 성별에 상관 없이 남녀

모두 그 출입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를 시설에 출입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놓시설들의 유해도에 대해 다음 표 6과 같이 반응하고 있는 바 디스코장, 술집, 당구장을 매우 유해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이와같은 유해 업소에 출입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이들이 느낀 비행충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 표 7과 같이 당구장, 술집, 전자오락실 등의 출입과 비행충동 유발과의 관계는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들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학생들이 자주 접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촉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매우 그 정도가 높고 더욱이 이러한 접촉은 남녀 구분 없이 전반적인 추세라는 문제 인식을 갖게 해 준다

또한 유해 환경의 접촉이 매개요인이 되어 청소년에게 비행충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문제로 꾸준된다 앞에서 소개한 한국청소년학회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빈도와 청소년의 비행충동이 어느 정도나 상관성이 있는가를 상세한 수치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들의

표 5 유해업소 출입 경험률 (단위 %)

유해업소별	학교별			성별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전자오락실	66.2	85.6	94.6	98.1	79.7
만화가게	30.8	47.6	77.1	63.9	61.4
비디오가게	84.3	85.0	89.5	77.9	76.7
영화관	78.9	87.0	98.0	93.4	91.7
당구장	7.1	6.7	32.0	30.2	8.2
노래방	23.4	24.8	61.0	51.0	43.6
까페/레스토랑	52.8	52.5	70.6	61.6	67.0
술집	14.6	12.5	35.2	34.9	20.4
포장마차	19.9	23.5	35.2	28.9	19.8
디스코장	11.1	3.9	25.8	11.6	6.3

자료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내책에 관한 연구(서울 체육청소년부, 1992), p 28

표 6 유해업소에 대한 유해도 평가 (단위 %)

업소\응답	나쁘다	보통	좋다	모르겠다	평균*	유해순위
전자오락실	25.0	54.8	13.5	6.7	2.21	7
만화가게	28.8	50.9	11.1	9.1	2.28	5
비디오가게	11.0	54.5	27.5	7.0	1.86	9
영화관	5.0	39.8	49.2	5.9	1.55	10
당구장	61.3	19.4	5.2	14.0	2.95	3
노래방	19.1	49.0	26.2	5.6	2.00	8
까페/레스토랑	29.2	46.0	15.0	9.8	2.26	6
술집	67.2	19.4	4.7	8.8	2.99	2
포장마차	47.0	33.4	6.4	13.1	2.65	4
디스코장	67.1	16.9	5.0	11.0	3.10	1

주 *는 수치가 높을수록 유해도 높음.

자료 한국청소년학회 앞의 책, p 315

표 7 유해업소 출입과 비행충동 유발과의 상관관계

구분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점	영화관	당구장	노래방	까페/레스토랑	술집	포장마차	디스코장	전체
비행충동	47	40	25	32	48	42	31	47	28	27	61

주 여기에 제시된 수치는 단순상관계수 수치임

자료 한국청소년학회 위의 책, p 332

유해환경과의 접촉이 미행충동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는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무엇이고 그 환경이 이용경험자 스스로 어느 정도나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성과 같은 연구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범위를 조정 내지 확대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IV.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발생원인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발생원인은 크게 두 측면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수 있다 즉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 측면과 정화구역 관리에 관련된 법적 혹은 제도적 측면이 그것이다

1. 일반적 측면의 원인

첫째, 학교주변환경 정화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의식이 부족하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없다 설령 이해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설마 내 자녀만은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해 무신경하다. 학교주변 정화구역에 금지되어 있는 불법시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해당 학교 측이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재학시키고 있는 학부모들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해도 고발해본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종 시민단체나 학부모 단체는 많아도 정작 학교주변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단체나 시민운동은 그리 많지 않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도 대부분 자녀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인 경우가 많음에도 내 자녀가 아니라면 남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출입시켜 영업만하면 된다는 의식이 가득하다 이와같은 의식 부재 현상이 결국 학교주변에 유해한 환경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주변 환경 정화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 많은 국민들은 학교주변의 일정 구역이

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정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 조차도 자신의 업소가 정화구역에 들어와 있는지 혹은 정화구역에 들어올 수 없는 금지된 시설인지 조차 간각이 없다 학교 측의 교직원들도 어느 시설이 구체적으로 정화구역에서 금지되어 있는 시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주변 정화구역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교육과 홍보 부족이 학교주변에 유해 환경이 계속 증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민간 및 업계의 자율적인 유해업소 규제 노력이 부족하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각종 유해환경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통제가 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규제라면, 민간 및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는 일종의 사회운동 차원의 규제 형태이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자꾸 증가하는 것은 유해환경을 학교주변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민간 부문의 시민운동이나 지역주민과 업소 주인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조직화,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네째, 학교주변에 혹은 학교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을 풍부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유해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다. 물론 학생들이 방과 후에 대부분 골바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문제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골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학교주변에서 배회하거나 유해업소와 접촉한다 따라서 이들을 보기 풍부히 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학교내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학생들을 학교 밖의 유해 환경으로 내쫓게되고 이에 따라 유해환경이 자꾸 증가하는 악순환을 막고 있는 것이다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업소일수록 학교주변으로 가야 영업이 살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예인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미흡하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는 평범한 경제원리를 유념하여 자신의 자녀들 혹은 자신의 학교학생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유해업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정부 부처간, 지역간, 집단간 이기주의로 학교주변환경이 올바로 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화 구역을 관리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가능한한 정화 구역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려고 해도 일반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보 혹은 지역개발이나 일반인들의 경제행위를 내세워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종류를 완화해 줄것을 번번히 요구하고 있다. 업주측 역시 업계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나 이유를 들어 금지 시설 기준을 완화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 지역주민 역시 학교환경정화보다는 지역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종류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기주의는 결과적으로 교육환경의 정화보다는 나 혹은 우리들의 경제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의식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정화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저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법적, 제도적 출면의 원인

첫째,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범위가 미흡하여 유해환경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은 크게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 범위가 매우 미흡하다 즉 동기준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행위 및 시설 중에는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위해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등장되고 있다. 예컨대 주류를 취급하는 포장마차, 불량비디오 및 잡지의 대여와 판매 행위, 등도 오래전부터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빈번하였다. 또한 학교주변에 위치하여 소음공해를 유발함으로써 학교수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골프연습장, 사격장, 비위생적이고 전염병균을 전파할 소지가 많은 동물사육장, 고물상, 사고시 그 피해가 막대한 독극물 제조장과 그 저장소,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많은 소위 비디오방 등도 학교주변에 있어서는 안될 금지 행위 및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상과 같이 추가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은 물론 획일적으로 포함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동기준의 범위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원래 학교주변환경으로서 부적합한 행위 및 시설은 사회변화나 국민의 경제활동변화에 의해 자주 바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른 빈번한 정화조치가 요구되고 아울러 금지행위 및 시설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금지행위 및 시설 기준의 개연성이 과도하다 즉 현재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 기준은 그 적용상 개연성이 많아 금지행위 및 시설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 예컨대 학교보건법 제6조 제①항을 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상대정화구역을 의미함)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제2호인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제4호인 오물수집장소, 제8호인 전염병요양소, 진고소, 10호인 전문음식점, 각종유혹음식점, 간이주점, 제11호인 호텔, 여관, 여인숙, 제12호인 공중목욕탕중 휴게시설, 제13호인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제14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여기서는 전자유기장, 특수목욕장중 터키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단배자동판매기 등을 의미함) 등은 '학교환경 위생강화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①항은 결국 여러 시설들은 비교적이고 비위생적이어서 정화구역 안에 들어설 수 없는 행위와 시설로 규정해 놓고서도 다시 그 중 일부 행위 및 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상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주지 않는 것인지를 재평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하여 법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①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법적용의 개연성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

들의 주관적이고도 지역이기주의적인 개입을 막을 수 없어 동의 위주의 심의를 놓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째, 금지행위 및 시설 기준이 모호하다 정화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법조항은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9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 2, 제4조, 제4조의 2, 제5조, 제14조, 부칙 등이다. 그러나 이를 관련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법 적용에 빈번히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모호한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예컨대 「학교보건법」 제6조 제①항에 규정되어 있는 “~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한다”에서 과연 어떤 행위 및 시설은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과 행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매우 비전문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동법 제6조 제①항의 1호에서도 비슷하게 내재되어 있다 즉 동법 제6조 제①항의 1호에 “~ 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에서도 역시 어느 행위 및 시설이 과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역시 법 적용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 제①항의 2호에 규정된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에 제조장 및 저장소’에서 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과연 총포화약의 판매를 취급하는 판매소 압축가스·액화가스를 판매하는 충전소와 주유소 프로판가스판매소를 저장소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유발되고 있음도 기준의 모호성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 제①항의 12호에 규정된 ‘광동목 욕탕중 휴게시설’ 역시 어느 시설은 휴게시설로 보고 어느 시설은 휴게시설로 볼 수 없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역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애매모호성은 동법 제6조 제③항에 시노 찾이분 구 놋나 두 능법 새6노 세운령 // 그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요한 조치’와 ‘요한 경우’가 과연 어떤 조치와 경우가 필요한 조치와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역시 모호하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서도 이러한 모호성은 계

속된다 예컨대 동법시행령 제3조 제②항을 보면 “시

· 도 교육장이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때 사전 협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것이 사전 협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생략되어 있어 협의 수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네째, 상대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정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정화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 하에 각각 구성되어 있고, 그 인원은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지역사회 유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교육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1개 교육청 정화위원회가 해당 교육청 관할의 모든 학교의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여부를 심의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타당성 있는 심의를 방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화위원회가 개별 학교의 주변환경 사정에 밝지 못하고, 학교 측이나 학교주변 주민들의 의사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다 전문적인 환경평가 없이 시설 설치를 동의해 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섯째,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고지하고 있는 행위 시설기준을 위반하였을 시 그 벌칙조항은 「학교보건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동법 제19조를 보면 “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실제 이 처벌기준이 적용되어 처벌받은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 등만 날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물론 범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위반사례가 현저히 늘어나고 보이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처벌 기준이 미흡하면 법 자체에 대한 준수정신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위반사례도 더욱 증가될 수 있다 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서 벌금형의 100만원 기준은 현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100만원 정도면 벌금을 물고서라도 금지행

위 및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식을 생성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100만원의 벌금기준은 1981년 동법 3차 개정시 정해진 액수로써 이미 15년이 경과한 현재 그 액수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벌금 기준액 수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서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운영과 관련한 유관법이 과다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만한 법적 대응 능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예컨대 학교장이 자신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과연 금지시설인지 아닌지, 금지시설인 경우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정화구역 내에 들어설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의 내용을 보면 많은 시설이 있으나 실제 그들 시설은 「학교보건법」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라 예컨대 동법 제6조 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의 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2호의 극장은 「공연법」, 「영화법」 등에 의해, 총포화약류는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의해, 압축가스 액화가스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 3호의 도축장은 「축산 및 위생처리법」에 의해, 화장장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밖에 4호, 5호, 6호의 오물이나 쓰레기 등은 「환경정책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 7호와 8호의 전염병원 등은 「의료법」, 「전염병 예방법」, 「의료보건법」 등에 의해, 9호의 가축시장은 「축산법」,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해, 10호와 11호의 각종 음식점과 호텔 등은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건축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13호의 사행 행위장 등은 「사행행위 등 규제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에 의해, 14호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들은 관련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실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과연 관련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고있지 않

으면 동구역의 관리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정화구역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러한 유관법의 과다는 결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을 관리하는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 등이 동구역 관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하여 그대로 방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케하고 있다.

V. 개선방안의 탐색

학교주변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방법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개선방안도 일반적인 대응 차원과 법적 혹은 제도적인 대응 차원으로 나누여 탐색할 수 있다

1. 일반적 대응차원의 개선방안

첫째,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올바로 확립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언론기관이나 각종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여기서 의식 교육과 홍보의 주요 대상은 각종 영업단체 경영주들과 그 단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업종별로 환경정화를 위한 자율적인 운동을 벌여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시민단체나 업체의 자율기구가 조직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각종 학교 환경정화운동단체에 고발센타 등을 두어 불법 시설이 정화구역에 설치되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세째, 학교주변 혹은 학교 내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 놀이시설과 공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마땅히 갈곳이 없기 때문에 학교주변의 유해시설에 출입한다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확보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재정을 확대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 장들도 학교시설을 너무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운영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학교내에 만일 유휴시설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학교 밖의 유해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만한 놀이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전대 구미 선진국과 같이 학교내에 건전한 노래방, 그리고 전자오락실, 휴게실과 같은 만화방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네째, 유해한 시설을 학생 스스로 접촉하지 않도록 자녀들에 대한 좀더 철저한 기정교육과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해한 환경과 접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유해환경을 전혀 접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해한 환경 근처에서 유해한 시설이나 물품, 그리고 유해한 각종 매체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유해 환경에 유혹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과 가치관을 심어 줄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모들 스스로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측 역시 학생들이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해시설이나 물품에 접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보완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칠자히 교육시키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두어 학생들에게 유해 시설과 접촉하는 데에 따른 경각심을 심어주고 학생 스스로 유해한 환경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법적·제도적인 대응차원의 개선방안

첫째, 금지행위 및 시설 종류를 확대한다. 현재 「학교보건법」 제6조 제①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종류는 법 제정이 이루어 진지 지금까지 약 29년이 경과되는 동안 소극적으로 그 기준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사회변화 및 경제 발전, 그리고 상해위와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이 금지시켜야 할 행위 및 시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금지기준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크다 여러 행위 및 시설중 새로이 포함시켜야 할 금지행위와 시설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는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정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학교의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나음과 같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학교보건법 제6조 제①항에서 공동묘지, 오물·쓰레기·분뇨 운반차량의 주차장, 각종 고물상 및 폐휴지집하장, 동물사육장, 가요주점, 기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및 포장마차, 안마시술소, 사격장 양궁장, 골프연습장, 성인만화판매대, 비디오 대여점과 비디오상영장(소위 비디오방), 독극물 제조장 및 그 저장소와 취급소, 아동·청소년에게 본드와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운전교습소(운전학원)을 추가하도록 한다

정화구역 안에서 현재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들 시설들을 새로이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공동묘지를 추가한 것은 이 시설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물, 쓰레기, 분뇨 등의 운반차량의 주차장, 그리고 고물상과 폐휴지집하장을 추가한 것은 이 시설 역시 악취와 전염병 유발, 소음공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역시 학교의 위생 보건과 학습 분위기를 해칠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사육장을 추가한 것은 동물사육장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가축시장과 유사하게 동물의 사육과정에 나타나는 비위생성과 악취유발 그리고, 전염병 유발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폐수 등의 축산공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각종 동물사육장을 금지시설로 규제하고자 할 때, 그 규제에 있어 동물의 사육규모나 형태, 동물의 종류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법시행령에 규제 규모나 형태, 동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간이주점, 그리고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추가시킨 것은 최근 설립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설 역시 알코올류를 취급하고 있어 이미 금지되고 있는 각종 유흥음식점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안마시술소를 포함시킨 것은 이 시설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공중목욕탕의 휴게시설이나 터키탕처럼 아동 학생들에게 비교적 유해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독극물 제조장 및 저장소와 그 취급소를 포함시킨 것은 이들 시설 역시 현재 금지되어 있는 합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와 유사하게 한번 사고가 나면 인근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으나(수년 전 인도의 보팔시에서 일어났던 유니온 가스공장 독극물 유출사건으로 수만명이 몰살당한 것을 상기할

것) 지금까지 학교주변에 금지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드와 부탄가스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한 이유도 최근에서 학생들이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본드 부탄가스 등을 구입하여 흡입함으로써 일종의 마약 중독성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전학원을 포함시킨 것은 이 시설이 학교주변에서 소음공해와 공기오염을 유발하여 학교의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위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지행위 및 시설 기준 운영의 모호성을 제거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정의하는데 있어 동법이나 시행령에 예가 없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고충이 되따르고 있음은 이미 문제점 지적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 ③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②항 역시 법조문 표현상 모호성을 제거해야 할 이유가 있으므로 다음 표 8과 같이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운영의 모호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을 관리하는데 있어 기준을 너무 치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융통성 없이 획일적으로 혹은 행정편의 위주로 금지시설을 규제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어떤 만화가게는 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깨끗한 도서실처럼 꾸민 후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만

화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만화가게의 주인이 선생님 같은 태도로 지도 감독하고, 학생들만 출입시킴으로서 성인이나 불량청소년들을 받지 않는, 만화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당히 권장할 만한 만화가게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를 어린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들어와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노래방이나, 건전한 전자유기장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칠저히 지키되 위와 같은 권장할 만한 시설은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여지를 열어 놓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은 만화가게, 전자유기장, 노래방 등이라고 해서 모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 개중에는 정말 깨끗하고 건전한 것도 있는데 왜 획일적으로만 규제하려 드느냐라는 반발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째, 금지행위 및 시설 기준 운영에서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이미 앞 문제분석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제2호, 제6호, 제8호, 제10호~제14호는 학교환경위생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정화구역안에서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환경위생정책 구역에서 금지시켜 놓은 시설 일부를 다시 완화할 수 있

표 8. 기준운영에 모호성 조항과 그 제거 안

모호한 기준	모호성 제거 조치
「법 제6조 제①항의 경우」	
○극장	○영화상영관과 공연장(연극, 쇼, 등), 식당식극장 포함
○총포 화약류의 저장소	○총포화약류의 저장소와 그를 판매하는 판매소 포함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저장소에 그 판매소 포함(예 가스충전소, LPG가스 판매소)
○도축장	○도축장 및 그에 준하는 동물 폐기처리장
○전문음식점, 각종유홍음식점, 간이주점	○가루를 시행하거나 혹은 술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모든 숙박업소
○공중목욕탕 중 휴게시설	○휴게시설중 체력단련시설은 제외
「동법 제6조 제③항」	
○~평요한 조치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 등의 조치~
○~필요한 경우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위반 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3조 제②항」	
	○~와 협의하여야 하며~
	○~에게 정화구역 설치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그 서식에는 학교명, 학교소재지 설립일시, 정화구역 범위 등을 기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는 이중 법적 구조를 갖게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기준의 개연성은 획일적 규제에서 오는 주민의 영업행위 제한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나 단서조항에서 유독 2호, 4호, 8호, 10호~14호 만이 때에 따라서 금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또한 법 집행의 형평성이거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타당성을 상실한 조항으로 보인다 즉 2호의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4호의 오물수집장소, 8호의 전염병 요양소, 진료소, 10호의 전문음식점, 각종유통음식점, 긴이주점, 11호의 호텔, 여관 여인숙 12호의 공중목욕탕중 휴게시설, 13호의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호에 의해 규제된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톡수목욕장중 터키탕,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단내자판기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만 있으면 언제라도 상대정화구역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서 조항을 폐지하여 법 집행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지행위 및 시설이면서도 어느 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않아" 허락할 수 있고, 어느 시설은 "나쁜 영향을 주어" 허락할 수 없는 것이나는 비판을 면케될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동법 제6조 ①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을 확보케 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자의적인 법적 해석 혹은 동의 위주의 심의를 사전에 봉쇄하고 혹시 유발될지도 모를 관련 영업부나 영업단체의 정화위원회에 대한 각종 유혹을 제거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세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절대 상대구역 구분을 폐지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의 단서조항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앞의 개선방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화구역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은 일단 학교학습에 방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성이 높고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위생에 위해하며 또한 학생의 비행을 유발하는 시설·장소이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장소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금지시

켜 놓은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6조 ①항의 단서조항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정화구역을 절대·상대구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폐지하여 동법 제정 당시의 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²⁾ 이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어느 시설이든 들어설 수 없고 그 밖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200M 이내 지역은 어느 시설은 들어서도 되느냐는 논란을 사전에 봉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는 아울러 어느 행위 및 시설이든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에 저촉되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일체 금지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 될 것이다

네째,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현재 「학교보건법」 제19조를 보면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강화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과 법이 그러하듯이 벌칙이 사회통념상이나 국민정서상 그리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잘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은 어느 정도 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인정되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회통념상 혹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경미하다. 예컨대 환경처가 매년 7월 24일부터 8월 15일 까지를 여름철 피서지 환경정화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향락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즉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인정되고 있는 현실인데 하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 위반시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이를 처리한다면 법형평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인상해야 하는가이나 이는 교육부가 여타의 벌금형이 있는 법의 형평을 고려한후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다섯째, 가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법」을 제정한다 현재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치와 그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 및 그 운영은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엄격히 분석해 보면 「학교보건법」은 대부분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내 환경위생에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처음부터 학교 밖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교보건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제정되어 있는 정화구역에 관한 내용은 동법 안에 있는 여타의 조항보다 그 중요성이 높다 예컨대 「학교보건법」 중 유일하게 법칙조항으로 되어있는 제 19조로 정화구역 안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법칙 조항임을 볼 때 이는 「학교보건법」의 여러 조항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 시설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항으로 정화구역의 위생관리를 중시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정화구역에 대한 법조항을 굳이 「학교보건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만약 정부가 정말 「학교보건법」의 유일한 법칙조항으로까지 명시해가면서 정화구역의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면 동법의 일부 조항 형태의 법률체계에서 벗어나 독립 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와 같이 정화구역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의 일부조항으로 있는 것 보다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법」과 같은 독립 형태의 법으로 존재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 잘 성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끼치게 됨과 아울러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정화구역관리를 위해 좀 더 나은 효율적인 법적 운영체계가 마련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그 법의 내용에 학교 주변환경 정화를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한정하고 정화구역의 범위와 그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독립 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법」이 제정된다면 그때는 현재와 같이 복잡 다기하게 분산되어 있는 유관법들을 정리하여 동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교신축시 처음부터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그곳에 일단 학교가 들어서면 정화구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해시설

이 정화구역 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시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먼저 가장 좋은 교육적 환경을 가진 곳에 학교부지를 마련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주변환경이 도저히 정화되기 곤란한 학교는 다른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곱째, 교육청별로 조직되어 있는 정화위원회를 단위 학교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동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현 정화위원회는 단위 학교 개별 사정을 일일히 모두 인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 대상의 학교수가 1개의 위원회로는 감당할 만한 수를 넘고 있다. 따라서 정화위원회를 학교별로 설치하고 그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정화구역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부 부처간, 지역간, 집단간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영업행위를 위해서라면 학교주변 환경 쪽이야 조금 악화된들 어때나라는 경제 제일주의로는 각종 이기주의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 학교주변환경을 올바로 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양한 이기주의를 극복 혹은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협의 혹은 조정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VI. 결 언

현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대에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 하였던 우리 국민들의 끝없는 세계 제일의 교육열이 오늘의 우리 나라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국민이 중시하는 교육이 주체인 학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생활 터전인 학교의 환경정화보다도 우리의 영업권 혹은 생존권, 생활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은 이미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百年之大計'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한 '孟母三遷'이라는 고사성어를 굳이 예로들지 않더라도 교육환경의 중요성은 이미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고자하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한다.

학교주변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논의도 따라서 교육이라는 가치가 다른 어느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기준이라고 인정할 때 논란의 폭을 줄일 수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듯이 학교환경정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층과 업소층이 따로 없는 분위기에서만이 오늘의 공청회가 큰 논란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강대근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7집, 1984
- 2 교육개혁심의회 「교육환경개선방안」, 1987
- 3 교육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대책」, 1994
- 4 권이종 외 「21세기를 대비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94
- 5 김상욱 「학교주변환경의 정화대책」 「교육월보」 통권 제126호 서울 교육부 1992. 6. P.P 44~47
- 6 김준호 「청소년 주변유해환경과 비행선도 방안」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 1977
- 7 노봉희, 「환경과 도시」 서울 녹원출판사 1984
- 8 대한교육연합회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 학교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 제33집, 1981
- 9 도종수 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10 박용현, 「학교환경의 사회적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의 동향」, 서울 배영사, 1968 P.P 105~110
- 11 박영희, 「학교환경과 주거환경에 따른 학습의욕의 상관성 연구」, 관동대학 「논문집」 제14호, 1986 P.P 239~269
- 12 손성원, 「환경과 보건」 서울 선진문화사, 1988
- 13 서울 YMCA,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1989.
- 14 서울 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항목문화 촌방시민운동 보고서」 1990
- 15 유혜경,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16 이수희, 「학교보건교육론」, 서울 교육출판사, 1986.
- 17 이중한,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매체」, 서울 YMCA 1989
- 18 유수현, 「청소년 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천협」, 제13권 4호, 1989
- 19 유재천, 「청소년 성교육의 유해환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서울 YMCA, 세미나보고서, 1989
- 20 정문식 구성희, 「환경위생학」 서울 신광출판사, 1978
- 21 정원식,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1975
- 22 정진홍,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 한국청소년 연구원 「한국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1989
- 23 최지운, 「대학환경과 정의적 특성」, 서울 예지각, 1984
- 24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 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1989
- 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1990
- 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홍업소 주변의 습관성 중독성 물질 오·남용 실태 연구」, 1991
- 28 한유경, 「학교주변환경의 실상을 진단한다」 「교육월보」, 통권 제126호 서울 교육부, 1992 6월호, P.P 84~93
- 29 한준상,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서울 연대출판부 1989
- 30 ——— 「청소년 유해 환경과 청소년 정책」 청소년 교육 환경개선 시민운동 심포지움 1991
- 31 Bloom B 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 Y John Wiley 1964
- 32 Cain Stanley A Future Environment of North America The Natural History Press New York 1966, P.P 44~46
- 33 Knirk, Frederick G Designing Productive Learning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9
- 34 Mc Innis, Noel You are Environment The Center for Curriculum Design Evanston, Illinois 1972
- 35 Watt, Kenneth E F Principles of Environmental Science Mc Graw-Hill Inc, New York, 1973